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연령 결격사유 완화〉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02052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설향로표지관리원 연령 결격사유 완화	2

I. 제안경위

2024년 7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향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설향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연령 결격사유 완화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 4. (생략)	제21조(결격사유) ----- ----- -----. 1. 18세 미만인 사람 2. ~ 4.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은 현행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정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설항로표지 소유자는 위탁관리업 등록을 위해서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고용해야 하며, 현재¹⁾ 전국에 총 303명이 등록되어 있음(첨부 1 참고).²⁾

1) 2024. 7. 기준

[표] 사설항로표지관리원 현황

(단위: 명)

지역 계	부산	제주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
303	68	4	68	51	19	13	-	11	29	14	14	12

* 연령: (20대) 14명, (30대) 66명, (40대) 94명, (50대) 52명, (60대 이상) 77명

□ 현행법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³⁾

□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 연령⁴⁾ 및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⁵⁾ 완화 등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사설항로표지

2) 「항로표지법」

제18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①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갖추어야 하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 그 근무 지역 기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시설의 확보 및 위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항로표지법」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조정(25세 이상→18세 이상, 「공직선거법」, '22.1.18.시행),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연령 하향(18세 이상→16세 이상, 「정당법」, '22.1.21.시행)
- 5)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완화(20세 이상→18세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 '24.1.1.시행)

관리원이 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18세인 사람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사설향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으나 이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사설향로표지관리원이 되어 관련 업체에 취업하고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선박직원법」의 해기사 결격사유⁶⁾, 「경비업법」의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⁷⁾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설향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동 법률안은 2024년 7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정부가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제출한 법률안(8개) 중 하나임.

6) 「선박직원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문 의 처
02)6788-5418

첨부 1

「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1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확보 기준'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장비 및 시설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확보 기준

항로표지의 설치위치 및 기(基)수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가. 육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보할 것 1)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2) 전기산업기사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전자산업기사 이상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전파표지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해상(항로표지의 일부가 육상에 함께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 다)	1) 항로표지가 10기 미만인 경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에 해당하는 사람(위성항법보정수신기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각각 확보할 것 가)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전자산업기사 이상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전파표지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다)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2) 항로표지가 10기 이상인 경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에 해당하는 사람(위성항법보정수신기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각각 확보할 것 가)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나)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전기산업기사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전자산업기사 이상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전파표지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다)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첨부 2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현황
(‘24.7 기준)

12개 소속기관에 55개사 등록

(단위: 사)

지역 계	부산	제주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
55	8	1	10	8	5	3	-	3	7	4	2	4

사설항로표지
관리원 현황
(‘24.7 기준)

55개사에서 총 303명이 사설항로표지 관리원으로 등록

(단위: 명)

지역 계	부산	제주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
303	68	4	68	51	19	13	-	11	29	14	14	12

* 연령: (20대) 14명, (30대) 66명, (40대) 94명, (50대) 52명, (60대 이상) 77명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28.>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구분	등록기준
1. 사설항로표지 관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고용할 것.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전기산업기사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전자산업기사 이상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전파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	가. 사무실 주된 영업 소재지에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이 경우 사무실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충전실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충전실(충전설비를 포함한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다. 선박 2톤 이상의 항로표지 점검·정비용 선박을 1척 이상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라. 측정시설 항로표지 위치측정을 위한 이동용 위성항법보정수신기 2대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3. 자본금	2억원 이상을 확보할 것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